「지방정부연구」 제2권 제1호(1998 여름) : 213~231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윤 태 범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지난 30여년간 행정부 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은 전략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행정으로의 집중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사법부는 말 그대로 행정의 시녀로 전락하고, 행정권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행정권의 비정상적인 비대화는 곧 부정부패의 만연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지금에 와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의 역대 정부들은 모두 이렇게 만연된 부패의 척결을 이유로 등장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역대 정부들의 반부패정책들은 대부분 구호들로 가득찬 것들로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적절한 정책수단의 제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없이 즉흥적, 대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그 동안 구상되고 추진되었던 역대 정부(박정희 정부-김영삼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몇 가지의 기준을 통하여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우리의 구조화된 행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Ⅰ. 서 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인간의 권력 추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력은 본질적으로 공유되기 보다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독점화 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 권력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 남용 혹은 오용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 absolutely)"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행정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행정부 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은 전략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행정으로의 집중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사법부는 말 그대로 행정의 시녀로 전락하고, 이제 행정권은 거의 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행정의 자화상은 두 얼굴을 하고 있다. 한 편에는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였다는(?) 자부심에 찬 얼굴이고, 또 한편에는 행정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권력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권력 독점적이고 부패에 일그러져 있는 도술이다.

대부분의 식자들은 우리의 행정부(공무원)가 부정부패에 상당히 물들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의 기관들도 한결같이 우리의 부정부패가 매우 극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조직(공무원)을 위기의 상태로 규정한다면, 당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히 이러한 위기에 걸 맞는 대응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략은 강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상당한 정도의 강제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즉 도덕적인 훈계나 윤리의식에의 호소는 이러한 위기의 행정조직에 그렇게 적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많은 방안이 역대 정부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방안들은 대부분 구호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결과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없이 대부분 즉흥적으로 구상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의 반부패 정책을 개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 들어선 정부가 행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반부패 정책의 평가기준

부패문제는 특정한 국가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도덕성,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Scott,1972:3),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다. 특히 행정부패는 「準公式文化(quasi-formal culture)」 내지는 「地下文化(underground culture)」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패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김해동, 1972:171).

이러한 행정부패의 성격과 빙산모형(iceberg model)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발생의 빈도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공식통계상 공무원부패 건수나 검거인원이 증가 혹은 감소하였다고 할 경우, 이것을 갖고서 공무원부패의 감소 혹은 증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즉 현재화된 부패에 대한 통제가 지니는 효과는 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즉 현재화된 문제에 대한 즉흥적인 접근이 아니라, 감추어진 대부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부패에 대한 통제(control)는 '조절', '규제', 혹은 '조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행정부패의 속성상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Clarke, 1983:207). 따라서 어떠한 통제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일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수단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무원부패의 상당 부분은 전략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체제적·구조적인 원인에서도 연유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Klitgaard, 1988:207).

이렇게 부패에 대한 통제를 이해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직접적 통제와 더불어 부패개입의 「기회(opportunity)」와 「동기(motivation)」를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수단에(주로 관리적 방법) 중점을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Klitgaard,1988 :202). 즉 행정부패의 통제에는 직접적인 통제수단과 간접적인 통제수단이 모두 고려될 때 그 효과가 있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것이다.[1]

따라서 부패의 효율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발생한 행정부패에 대한 사후적인 엄격한 적발과 통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체제(제도 혹은 관리)가 부패의 효율적 통제를 위하여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분명한 반부패 정책의 존재는 공무원들의 기대와 행동의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여 주기 때문이다(Gardiner & Lyman, 1978:183-195). 여기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문제에 대한 인식

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현재의 부패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모든 정책의 출발이 그러하듯이, 반부패를 위한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이다.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과 강도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행정부패의 경우, 현재화된 것 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수면하에 감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정치지도자가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패의 억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도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Quah, 1990:849),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인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2]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상황의 진단이 반부패를 위한 정책의 첫 단계인 것이다(Klitgaard, 1988:17 ; Hogwood & Peters, 1995:13)

2. 정책의 추진목적

행정부패는 다양한 요인들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특히 행정부패가 발생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부패에 대한 외국 규정은 더욱 난관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행정부패는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행정부패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부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도(목적)로서 반부패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부패 그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다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반부패 정책이 수립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문제의 본질은 왜곡되고 정책도 일관되게 집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부패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러한 해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반부패 정책이 수립될 때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Klitgaard, 1988:46).

---

1) 실제로 공무원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매우 제한된다. 또한 부패행위의 억제를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과 적발활동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나은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최병선,1994:4).

2) 아시아 국가중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는 이러한 측면에서 반부패에 성공하였으며, 필리핀의 경우에는 다양한 반부패 정책에도 불구하고 마르코스의 반부패의지와 문제인식의 결여로 반부패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Quah,1990).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3. 정책대상집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는 분명한 대상집단(target group)이 선정되어야 한다. 정책대상집단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유형이나 강도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의 성격이 규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대상집단의 선정이 요구된다. 반부패정책의 경우 일반적인 정책대상집단으로서 공무원 사회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과연 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혹은 부패발생율이 높은 특정 집단(조직 혹은 부서)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반부패정책의 내용이 상이하게 된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경우 시민사회 까지도 반부패 정책의 대상집단으로 설정하는데, 이럴 경우 정책 대상집단의 포괄성으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Hogwood & Peters, 1995:13). 물론 이와 같은 정책대상집단의 선정은 문제의 강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모호한 정책대상집단의 선정은 통제비용의 비효율적 이용 뿐만 아니라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Gruber, 1987:62-73),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반부패정책의 대상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추진체계

정부에 의하여 많은 정책의제가 탄생하고 또한 실제 정책화되고 있지만, 반부패 정책의 경우는 다른 정책과는 달리 바로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한계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부) 스스로가 반부패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적인 논리에 따라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경우,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반부패 정책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반부패 정책이 완화되거나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것은 부패가 감소되어서가 아니라 반부패를 추진하지 않아도 될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부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 혹은 조직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반부패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김해동, 1994)

5. 정책수단의 제도화

반부패를 위한 정책은 다양한 수준에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반부패를 위한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도 중요한 반부패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유형의 정책은 그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의 지시로서의 반부패 정책은 법과 제도에 비하여 그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지시가 곧 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초기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대통령의 관심이 적어지면 바로 소멸되고 말게 된다. 따라서 인적 개혁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반부패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수단의 제도화이다(Johnston, 1982:141-14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은 예방 이상으로 어려우며 적발과 처벌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항상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반부패를 위한 정책수단의 제도화는 예방적인 수단의 확보이며(Hogwood & Peters, 1985:160-164), 동시에 상시적인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 정책의 지속성

모든 정책이 반드시 장기간 동안 지속될 필요는 없다. 문제의 정도와 문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따라서 정책의 지속기간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책이 종결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반대로 문제상황이 해결되었는데도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비능률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반부패정책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부패가 매우 고질적이고 사회 전반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반부패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상황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성 정도도 반부패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한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반부패를 위한 정책의 첫단계로서 부패의 상황에 대한 자가진단(self-diagnosis)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변화[3]

1. 박정희 정부(1963-1979)

박정희 정부는 시기별로 유신체제 전과 후로 크게 대별하여 볼 수 있으며, 반부패정책도 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유신체제 이전의 정책이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면, 유신체제하에서의 정책은 비록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제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제3공화국은 군사 쿠데타와 더불어 등장하여 1972년 10월 유신 등장 전까지 존속하였으며, 나름대로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 과거에 비하여 경제적인 부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적인 잉여를 둘러싼 행정부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해동,1994:145-149 ; 김명수,1997:28-30 ; 안해균,1986). 1,2공화국의 행정부패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부패이었다면, 3공화국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는 행정부패는 생계형 부패와 더불어 경제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축재

3) 여기에서는 역대 정부의 부패실태와 반부패정책을 어느 정도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이 수립·추진된 3공화국 부터 논의하기로 한다. 1,2공화국에서도 직접적인 반부패 정책은 아니지만 시간지키기, 경례복종, 책임완수, 공정, 단결 등을 규정한 '관리좌우명(官吏左右銘)'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무원들에 대한 교화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1950년대 말에는 공무원의 적은 보수를 인상하여 부정부패문제에 대응하기도 했다. 그리고 심계원이나 감찰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적인 통제기관도 설립하여 반부패활동을 하였으며, 비록 불만스럽기는 했지만 부정 공직자의 징계와 처벌도 있었다(서울대 행정대학원,1986:710-714;조영재,1980:72-85).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형" 부패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3공화국은 부정부패 일소를 혁명공약으로 내걸었던 군부에 의하여 출범한 정부로서 미약하나마 반부패정책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부 출범전 부정축재처리법(不正蓄財處理法)을 제정하여(1961.4.15)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등으로부터 부정축재를 환수하고, 부정선거사범과 국사·군사독직사범 등을 처벌할 소급법을 만들고, 위반사범들을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에서 처리하고, 부패공무원 조사를 위하여 「특별수사반」을 설치하기도 하였다(오석홍, 1995 : 327-329). 그리고 '관기'를 확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감사원의 확대 설치[5)],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구성[6)] 등은 직·간접으로 반부패정책에 연관된 조치들이었다.

이 때는 사회 전체가 발전지상주의 시기이었으며, 이 흐름이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 반부패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7)] 즉 반부패에 대한 구호만 난무하였을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패방지책이 제시되지 못한 시기이다(오석홍,1995:38).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있는 의례적인 공직사회에 대한 일제 숙정은 부패공직자에 대한 '공평한' 응징효과도 교육적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다(정승건,1994:67-68).

제4공화국의 경우 제3공화국의 연장으로서 「유신정권」으로 일컬어지듯이 출발부터 정당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내내 정당성의 시비에 휘말렸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독재의 심화는 정경유착 등 정치부패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패가 억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8)] 이와 같이 심화된 부정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반부패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또 하나의 강압적 통치수단으로 왜곡되었다.[9)]

---

4) 특히 이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행정체제가 정비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체제 정비 이전의 1,2공화국의 행정부패에 비하여 폐해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관급자재를 때들리는 행정부패가 성행하여 각종 부실공사가 만연되었으며, 사정의 핵심인 감사원도 체제정비가 덜 되어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직권남용 관련 부패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5)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설치하였던 헌법상의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상의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1963년 3월 감사원으로 통합하였다(감사원,1988).

6) 1964년 6월 1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광범위한 행정개혁사업의 입안을 주관하도록 그 임무가 부여되었지만 실제로는 반부패를 포함한 행정개혁을 주도하지 못하였다. 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당시 통치자의 큰 관심사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면서 그 기능이 현격히 축소되어 행정개혁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1981년 폐지되었다(오석홍, 1994:249).

7) 사회를 전반적으로 탈정치화시킨 가운데 대대적인 공무원 숙정이 있었고, 2년반동안의 군정기간 동안 행정조직은 12회나 개편되는 등 체제적 안정성은 매우 보족하였던 시기이다.

8) 이 시기는 아직 체제 정비의 초기탓인 듯 비교적 손쉬운 형태의 부정이 많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서 1977년 8월 노동청 ○○지방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산재지정병원의 의사들과 짜고 산재보상보험의료비를 초과지급하고 가공환자를 만들어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험의료비를 편취한 사례나, 같은 해 5월 동양증권회사로부터 단주처리를 잘 봐 준다는 조건으로 2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재무부 증권보험국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수뢰), 증권거래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사례, 그리고 1978년 3월 서울시 수도국 공무원들의 상수도정수기 납품비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발연대 초기의 특성을 반영하듯 건축관련 부정도 많이 발생하였다. 물론 지금도 건축관련 분야는 복마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비리의 대표적인 온상으로 지적되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서 1977년 9월 서울시청 주택관계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업자와 결탁하여 상가, 아파트 등의 경쟁입찰 때 내정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특혜를 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례나, 서울시내 구청에서 실시한 각종 토목공사의 낙찰과 준공검사를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종로구청 토목과장 박○○, 전성북구청 청사신축공사 현장감독관 윤○○ 구속사건, 1978년 7월 현대그룹 산하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의 아파트를 특수분양받은 곽○○ 서울시 제2부시장 구속사건, 1979년 6월 아파트 승인과정과 준공검사를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시 주택국장 이○○, 도시정비국장 홍○○ 등의 구속사건 등이 대표적인 건축관련 부패사례에 해당한다.

9) 비록 유신체제하에서 많은 정책들이 강압적인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변질되기도 하였지만, 긍정적인 평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러한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반부패정책으로서 대통령에 의하여 주도된 『서정쇄신운동(庶政刷新運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유신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오석홍,1990:69) 1975년부터 추진되었다.[10] 공무원사회의 부패척결에 초점이 모아진 이 서정쇄신운동은 그 대상범위가 매우 폭넓게 진행되었다.[11] 이렇듯 서정쇄신은 행정부문에 있어서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운동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개혁을 서정쇄신에 연결시키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기도 하였다(오석홍, 1977:110-114).

당시 정부는 『계열연대책임제』[12]와 『서정쇄신 상벌기록부』 작성[13], 민간인에 대한 쌍벌제 적용과 비위 퇴직자의 취업금지를 통하여 서정쇄신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단들은 모두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활용된 것으로서 법률상 많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오석홍, 1995 : 330-331).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추진된 서정쇄신운동은 주로 청와대의 『사정담당특별보좌관』과 『민정비서관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서정쇄신은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추진되기 보다는 각종 지시와 지침 등에 의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서정쇄신운동은 당시의 유신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이지 궁극적으로 공직사회를 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석홍,1990: 정승건,1994:69). 특히 공직사회의 쇄신결과를 일반사회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었지만, 문제는 당시 정부의 정통성 결여와 유신체제적 구조로 인하여 사회에 적극 수용되지는 못하였다. 서정쇄신운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확인점검반, 암행감사반, 부조리시정특별반과 같은 임시조직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비선조직의 운영은 결국 정규조직에 의한 사정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서정쇄신 초기에는 공직 부적격자의 대체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강제퇴직이 크게 늘었다. 이 강제퇴직은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면직이라는 말 대신 공무원의 『숙정(肅正)』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었다(안해균,1986:265-269).[14] 이

가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일부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서 민원행정과 같은 분야는 유신체제하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부각되었다. 정부는 국무총리령 제125호(1975.3.28)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민관계행정법령정비위원회』를 3개월간 시한부로 설치하고 법령정비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대민관계업무가 개선되었다.

10) 서정쇄신의 출발 시점은 정확치 않다. 즉 1975년 3월에 발간된 『행정백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75년 3월 7일의 부조리척결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이에 따른 1975년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민업무민폐 시정책" 시달을 그 출발로 볼 수 있다(문화공보부, 1976:1).

11) 서정쇄신에 대한 집착은 대단한 것이어서, 1975년 이후 『행정백서』에서는 서정쇄신을 정부의 최우선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4공화국 몰락까지 이어졌다.

12) 1975년 3월 22일자 국무총리 지시("對民業務의 弊弊是正策" 중 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관계국민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을 때는 그 지휘감독자를 같이 문책한다) 및 1976년 11월 1일자 국무총리 지시(系列連帶責任制運營細部指針).

13) 서정쇄신 상벌기록부는 조선시대의 『臧吏案』 및 『淸白吏錄』에서 그 제도적 선례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조선조에는 장리 즉 탐관오리로 지적되어 장리안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본인은 물론 그 아들과 자손까지 3대와 사위까지도 사헌부, 의정부, 지방수령 등 중요한 淸職에는 기용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신분적 緣坐制이다(조영재,1980:109).

14) 1974년의 경우, ① 과거 독직사건에 관련되어 징계받은 경력이 있는 자, ② 어느 특정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지목되는 자, ③ 민원대상자, ④ 분수에 넘치는 사치한 생활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을, 1977년의 경우, ① 국가관, 시국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소신없이 무사안일한 자, ② 서정쇄신 노력이 부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숙정작업으로 행정체제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촉진되고, 공무원의 태도가 개선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상부지향적으로 되어 상관의 눈치만 보는 등 한동안 무사안일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제3공화국의 경우에는 정국이 불안정할 때마다 숙정을 단행하였으며, 유신체제기에도 부정부패의 일소, 공무원 대향숙청, 서정쇄신 등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국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정책들은 공무원부패에 대한 억제 보다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행정문제화시키고, 관료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통하여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었다는 평가가 보다 일반적이다(오석홍,1990:69). 결국 박정희 정부하의 반부패 정책은 초기에는 비제도적인 대응을 하다가, 유신체제를 기점으로 정부의 안정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강도높게 공직사회 만이 아니라 전 사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정책의 본질이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전두환 정부(1981-1988)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는 유신정권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정부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만큼이나 행정부패도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에서 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Dobel,1978). 특히 정치자금의 수수를 둘러싼 대규모 정치부패가 발생하여, 규모로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가 않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행정권(공직자)까지 대형 부패에 연류되는 사례가 많았다.[15]

이렇게 제5공화국은 본래적으로 결여한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Jun, 1985:63-64) "과감한 개혁,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전략하에 구정치의 청산과 부정부패의 일소를 추진하였다.[16] "정의사회 구현"으로 표현되는 국정목표의 달성은 "사회정화운동"의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사회정화위원회,1988:15-21).[17] 이 사회정화운동은

하여 부정과 부조리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관과 감독관, ③ 특정업자와 상호유착, 사행노릇을 하는 자, ④ 상하, 동료간에 부당한 청탁과 물의를 일으킨 자, ⑤ 권력을 남용하여 타기관과 국민을 괴롭힌 자 등을 숙정대상으로 하였다(안해균, 1986 : 267-268) .

15) 또한 이 시기는 수출이 상당히 잘 되던 시기로서, 이와 관련된 공무원부패가 특징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서 1985년 12월 수출업자들이 통관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운송허가서류를 발부받거나 수출품검사에 합격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에 공식적으로 상납한 돈을 세관의 민원담당직원에서부터 지장, 과장, 국장에 이르기까지 통관업무관계 공무원들이 주급 또는 월급 형식으로 나눠 착복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건은 개인 차원의 부정이 아니라 조직차원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4공화국의 경우와 같이 건설을 둘러싼 부정부패도 다수 발생하였다. 건축관련 부정으로서 1985년 12월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울산소방서 소방과장 이○○ 등의 구속사건, 1986년 7월 정부 발주의 금강유역 상수도 공사 등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건설부 도로국장 노○○, 대구시 건설국장 김○○, 도로공사 전 기술본부장 김○○ 등 구속사건이 건축관련 부정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16) 전두환 정부는 이러한 반부패운동이 정치사회적 안정과 정의사회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반부패정책의 정치적 동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제5공화국은 사후적으로라도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많은 개혁작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서 소위 10·15 행정개혁이라 불린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여(1981. 10. 15) 전반적인 조직 및 인사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직자의 복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재산등록제」를 채택하였다(총무처, 1982:37-45).

17) 제4공화국의 「서정쇄신」이 주로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운동이었다면, 제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국무총리 직속의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80년 11월 1일 정부조직법 제2조 7항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된 이래, 제5공화국 내내 행정부조리와 부패 등을 시정하기 위한 통제장치로서 매우 폭넓게 이용되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공직사회의 건전한 윤리관 확립 및 각종제도의 개선을 통한 예방감사활동에 주력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차원을 넘어서 전 공직자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두려하게 유도한 나머지 오히려 공직사회의 침체와 무사안일을 가져왔으며(김영평, 1987:105), 여타 행정부의 통제장치와 중복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부정적 측면도 노출하게 되었다[18]. 더욱이 사회정화운동의 범국민적인 확산이 자율적인 민간주도가 아닌 행정부의 사정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행정체제에 대한 사회의 통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행정체제의 통제로 흘렀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오석홍,1996:332).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전개된 '사회정화운동'은 부패하고 비윤리적이라고 평가된 공직자들을 숙정하고 부정축재에 대한 국가환원조치를 취하였으나, 이 정책은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으며 많은 부작용속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권 후반기에는 부정적인 정책으로서 평가되었다[19]. 이러한 사회정화운동을 통하여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청탁배격운동', 행정개혁, 공무원윤리헌장의 제정(1980.12), 공직자윤리법 제정(1981.12)[20]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특별하게 「淸廉度(淨化度)」라는 것을 측정하여 공직사회를 통제하기도 하였다.[21]

이렇게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화가 상당히 미비하였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비서실(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을 통한 사정이 주로 이루어져 반부패정책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즉 4공화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반부패를 위한 제도화의 시도가 있었으나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은 표면적으로 부패척결과 정의로운 정부를 표방하였으나, 오히려 집권세력들 자신이 부패에 깊숙히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추진되다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체계적이지 못한 반부패정책의 실패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오히려 부패에 무감각하도록 만들었으며 부패를 더욱 더 제도화·체계화 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22]

처음부터 공직사회를 포함한 전 사회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정쇄신이 정권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정권의 유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운영되었다면, 사회정화운동은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어 처음부터 부당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공화국 정부는 사회정화운동을 "조국 근대화를 위한 범국민적 정신혁명운동 혹은 사회개혁운동"이라고 스스로 자찬하였다(현대사회연구소, 1981).

18) 강압적 반부패정책은 공무원들의 불안감, 무사안일, 그리고 두소신 등을 유발하였으며, 이 시기의 공무원들은 "浮游하고 있는 좌절의 관료기구"로 묘사되기도 하였다(김영평,1987).

19) 1980년 7월 공무원 5,700 여명, 투자기관 직원 3,000 여명 등이 강제퇴직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993년 7월 당시 사회정화위원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93,7.7).

20) 『공직자윤리법』은 해당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화,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 조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이었으나 등록재산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법규상의 미비로 그렇게 실효성있게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단순히 제도상으로만 존치하였을 뿐이다.우리의 공직자윤리법은 5공화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제정되어, 처음부터 실효성 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호섭,1996).

21) 이러한 「청렴도」는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조직과 일반시민사회까지도 측정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정화운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통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2) 이 당시 정부는 툭 하면 "○○ 강조주간"을 설정하여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제도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3. 노태우 정부(1988-1993)

새롭게 들어선 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화투쟁에 의하여 타율적이기는 하지만 5공화국에 비하여 상당히 민주주의를 지향한 정부라는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부정부패에 있어서만은 기존의 정부와 차이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반부패 의지가 상당히 박약한 시기이다. 국회상공위원회 의원들의 뇌물외유사건,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 정보사부지 사기사건 등 대형 부패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이다.[23]

이러한 제6공화국에서는 제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명칭만을 달리하는 '새질서·새생활운동'이라는 개혁운동을 1990년부터 대통령 주도하에 추진하였으며,[24] 이 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반부패가 강조되었다. 시책의 주요내용으로서 취약시기(선거시기, 설, 추석, 휴가철 등) 공직기강의 특별관리, 공직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육·직장교육·부서별 대화교육 강화, 국무총리실 주도하의 구조적·관행적 부조리 척결과 정부합동특감반 운영, 부조리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제 실시와 각급 기관에 의한 기동전담반 운영, 대검찰청 비리특수부와 대민특감반의 활동 강화 등을 들 수 있다(국무총리행정조정실,1993).

그러나 이러한 새질서·새생활운동은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처음부터 정부주도의 운동으로 출발되었고 결국 그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되었으나, 이 역시 제도화되지 못하고 구호로서 그치고 말았다. 즉 각종 정부 주도의 캠페인이나 홍보가 주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6공화국 당시에 활용된 방법들을 보면, 중앙징계위원회의 엄정운용, 복무관리 지도의 철저, 특별감찰, 정부합동특감반 설치·운영, 공직자 새질서 새생활 실천 3대 과제의 선정 등 대부분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구호들이 정책으로서 제시되었을 뿐[25] 행정부패의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 보다는 교화적인 수단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었다(정정길,1989:365)[26]. 반부패에 무기력하기는 3공화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으나, 오히려 국민들의 무관심만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제5공화국의 행정은 "강조주간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오석홍, 1994:268).

23) 이 시기에는 다른 시기와는 달리 기존의 건설관련 비리와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서 1990년 건설부 수자원국장 최○○가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나, 1988년 8월 최○○ 서울시 교육감의 부정사건과, 1990년 6월 김○○ 전 철도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부정에 대한 취약한 분야의 하나인 소방분야에서의 비리도 줄지 않아서, 1991년 9월 소방공무원들이 관내 대상업체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마다 돈을 들어 매주 15-30만원씩을 계장, 과장, 서장 등에게 각각 상납해 온 소방공무원들의 구조적 비리도 볼 수 있다.

24) 제6공화국은 출범 직후부터 소위 5공 청산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의욕적으로 국정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3당합당이라는 돌파구를 찾게되고, 이 합당을 계기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라는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즉 이 운동은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25) 당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3대 과제로서 제시된 것은 승용차 10부제 운행, 고급 유흥업소 출입금지, 일과시간중 경조사 참석금지 등 일반적인 복무와 관련된 것들 뿐이다(국무총리행정조정실, 1993:166).

26) 이러한 교화적 수단은 반부패를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관료제를 이완시키고, 부처간 할거주의만 강화하여, "한국에는 개별부처만 있고 행정부는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한국일보,1992.5.2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4. 김영삼 정부(1993-1998)

자칭 문민정부로 일컬어지는 김영삼 정부에 국민들은 역대 정부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물론 사회적 형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초기에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김영삼 정부도 예외가 되지는 못하였다(김창국, 1997). 많은 대형부패에 청와대가 관련되었고 고위공무원들의 부정이 나타났으며, 한보사건 등 대형 부패사건이 줄을 이었다.[27]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소위 '한국병'을 제거하고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부정부패척결, 경제활성화, 그리고 국가기강확립을 3대 국정과제로 규정하였다(공보처,1997:17-22). 여기서 가장 강력한 개혁정책은 '옷을 맑기운동'으로 시작된 반부패운동이었다.[28] 먼저 대통령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정치자금 안받기, 청와대 생활의 근검절약, 행사간소화, 지방청와대 개방·전용, 안가철거, 대통령의 골프 안치기, 대통령의 자발적인 재산공개 등 역대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반부패 시책으로서, 1981년 제정되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의무화[29], 「금융실명제」(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3.8.13)의 전격 실시를 통한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실명제」 실시(1995.3.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강화, 감사원장 자문기구로서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설치 및 감사원의 감사권 확대 등을 들 수 있다(공보처, 1997:23-30). 특히 그동안 소외시되었던 시민단체들이 반부패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문민정부의 반부패정책은 과거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과거의 정부들이 추진하였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기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사정활동도 강도높게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운동도

---

27) 김영삼 정부에서도 대형 부조리와 함께 고위공무원들의 부정이 줄지 않았다. 1995년 5월에는 이○○ 노동부 장관이 산업은행 총재 재직시 특정업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6년 3월에는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이른바 형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독점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되어 경제검찰로서의 권위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급기야는 1996년 6월 재정경제원 한○○ 국고국장이 주식상장과 관련하여 기업체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상당히 깨끗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곳 조차도 부패에 물들었으며, 역시 문민정부 들어와서도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는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우리의 고질병임을 증명하고 있다.

28) 사실상 김영삼 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신한국창조운동의 출발은 반부패운동으로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추진된 일련의 반부패 조치들은 역대 어느 정부와는 비교가 않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병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부패의 제거는 사회정의의 구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앞장서서 반부패를 지휘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아들과 휘하의 많은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로 법정에 서고, 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다. 김영삼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반부패에 절대적으로 실패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 1993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확대, 재산공개대상자의 선정,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재산 심사권 부여, 불성실한 재산등록이나 취업제한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등 1981년도 제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그 내용을 강화화였다. 이어서 1994년에는 등록재산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동시에 추진하였다[30].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반부패정책들은 초기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해지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부패통제 관련 법과 제도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를 너무 경직시킨다거나 정치보복 혹은 표적사정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31], 이른바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공직자의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인 행동의 피동화를 초래하였다. 구제도(기득권층)의 반발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15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난 1997년 12월 29일 국회는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면서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폐기하였다. 이로써 지난 1993년 8월 소위 문민정부가 검은 돈의 흐름을 막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기치를 내걸고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던 「금융실명제」가 마침내 경제불황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32] 실명거래는 부패방지의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라는 점에서(이윤호,1997:270-272), 금융실명제의 포기는 곧 여타 법률과 제도들의 무력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하에서의 반부패정책은 확실히 역대 정부와는 달리 단지 구호로서만 끝내지 않고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패처결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지니지 못하였으며,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서 다양한 제도들과 법규들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정권 말기에는 거의 반부패 정책을 포기함으로써[33] 결국 역대 정부에 버금가는 수많은 비리로 점철된 국가를 만들고 말았다(오석홍,1997:56-68).

Ⅳ.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종합평가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반부패 정책들이 마련되어 추진되었지만, 대부분 구호로서 끝나고 부패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데 그렇게 실효성있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즉 대부분의 반부패 정책들이 부패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대중적인 접근을 하였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되었고, 충분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 추진되었다.

---

30)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은 역사바로세우기에서부터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이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이었다(공보처,1997).

31)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과거의 정부와 크게 구별되는 것은 과거의 부패에 대하여 강력하게 청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시작된 과거의 부정부패에 대한 청산은 역대 정부가 감히 취하지 못하였던 조치이었다는 점에서, 비록 많은 경우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창훈,1994).

32) 대선기간동안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IMF 구제금융 지원기간에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고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들은 하나같이 무책임한 것들이다. 금융실명제가 어느 정도 부작용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위기가 여기서 촉발됐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문민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반부패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失明을 하고 말았다.

33) 역대 정부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정부 자체의 도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권 말기의 반부패 정책의 완화 내지는 포기는 말기적 기강 해이와 더불어 더욱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하에서는 앞서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6가지 측면에서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특징을 평가하고자 한다.

1. 반부패에 대한 대증(對證)적 접근

부정부패에 대하여 지나치게 대증적이고 즉흥적으로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부패는 매우 구조화되고 체질화되어 일종의 구제도로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증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대증적이고 즉흥적인 접근은 그 당시에는 부정부패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부정부패를 더욱 제도화시키고 종국에는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이 대부분 운동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그 나마 항상 결승점에 가 보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하나의 생활양식(a way of life)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야 적절한 반부패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Hogwood & Peters,1985:179-181), 우리의 경우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였다.[34]

2. 반부패정책의 정치적 활용

역대 정부의 부패통제를 위한 각종 수단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부패에 대한 통제 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통치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김영삼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가 그 출발부터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들은 사후적으로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정부패의 일소 등을 전략적으로 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이러한 반부패 전략의 활용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정부가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정부는 반부패정책에 초기와 같은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특히 4공화국의 서정쇄신은 사후적인 정당성의 확보 보다는 오히려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왜곡 이용되었을 뿐이다. 특히 이러한 반부패 정책이 상당 부분 정치활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반부패의 분명한 목표와 대상집단을 상실하게 되고, 정부 말기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지나치게 광범위한 반부패정책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정책의 대상집단(target group)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책은 기본적인 성격상 자원, 인력, 영향력, 시기 등에 있어서 일정한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상집단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살펴보면 반부패정책의 적용범위가 매우 모호하

34) 김영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분석도(박남치,1994), 이와 같은 의미에서 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거나 광범위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정부 초기에는 공직사회를 반부패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개 힘없고 직급이 낮은 공직자가 주요 적요대상으로서 실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은지 1년 정도만 경과하면 그 범위도 대우 확대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변질되곤 하였다. 결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던 정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때, 분명한 목적의식에 근거하지 않은 반부패정책은 결국 구호로서 가득한 추상적인 정책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반부패정책의 대상집단의 불명확성과 추상성은 역대 대부분의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4. 비정상적인 조직 및 체계의 활용

그 동안 역대 정부는 부패억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부분 기존의 정상적인 사정조직을 활용하기 보다는 비선조직이나 임시조직 등 비정상적인 조직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조직의 활용은 결국 정상적인 사정 혹은 통제조직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부패 통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제수단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비정상조직은 또 다른 권력수단으로 등장하여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왜곡 시켰다. 특히 우리의 경우 사정기구가 부패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검찰조직과는 별도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강성남,1997), 이러한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의 사정체계를 재정비하여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낮은 수준의 제도화

역대 정부별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치의 마련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대부분 현란한 구호로서만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즉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들은 '서정쇄신', '사회정화', '새질서 새생활', '윗물맑기' 등의 그럴듯한 구호 아래 추진되었는데 말 그대로 운동의 차원에서 구호로서만 대부분 끝났을 뿐, 반부패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와 법체계로 연계시키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물론 김영삼 정부의 경우 다른 시기에 비하여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 상대적으로 제도화에 치중하기는 하였지만 제도나 법규상 상당한 흠결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마지막까지 실효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대부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였을 뿐이다.

반부패정책의 제도화는 단지 법이나, 제도, 기관을 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부패에 비교적 성공적인 국가들이 정책의 제도화에 치중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김해동, 1994:207-233)

6. 일시적인 반부패정책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매우 강력한 반부패의 의지를 나타내었으나,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흐지부지 되었다. 그것은 결국 대부분의 정책들이 처음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터 부정부패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부패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굴복하였음을 의미한다. 개혁과 부정부패 일소를 기치로 내걸었던 역대의 모든 정부들은 한결같이 기존의 부정의한 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조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정부중 가장 개혁적이었다고 하는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 개혁정책인 『금융실명제』의 폐기가 이를 증명한다.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중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정부 말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은 유신체제하의 「서정쇄신」 뿐이라는 것은 역사의 아니러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비민주적이고 부패하다고 한 정부에서 반부패 정책이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들은 출발에서부터 반부패라는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선행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반부패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인 목적이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반부패 정책의 출발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왜곡된 반부패 정책들은 부패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고착화시켜서, 이제는 거의 치유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부정부패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등장한 정부도 반부패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과거의 정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집권 이전의 반부패의지가 이미 실종되기 시작하였고 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대선 이전(1996년 12월 5일)에 국회에 의원발의로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안을 제출하여 어느 정당 보다도 부정부패의 추방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대선공약(1997년 12월 2일 발표)에서도 '부패방지법'의 제정,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안들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반부패정책에 대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대선 승리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1998년 2월 12일), 반부패정책으로서 특별검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보완 정도만을 제시하여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물론 최근 몇 건의 부정부패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이름을 달리 하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는 하였지만, 앞서의 역대 정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 보다는 대증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1〉 신정부의 반부패정책기조의 변화

분 야	부패방지법 (1996. 12. 5)	170개 공약 (1997. 12. 2)	100대 국정과제 (1998. 2. 12)
부패방지법	○	○	
인사청문회		○	
특별수사기구	○	○	
돈세탁방지제도	○	○	
금융실명제	○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	
특별검사제		○	○
재정신청제도		○	○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	○	○	

언제 어느 때고 부정부패와의 대결은 곧 「구제도(ancient regime)」의 모순과의 대결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항상 부정부패 억제를 위한 개혁정책은 국가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현재의 한국 사회를 갈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갈등의 한 원인을 부정부패 혹은 부정의(不正義)라고 인식한다면 당연히 갈등의 원천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두려워하여 갈등 회피적인 전략, 즉 현실(이 현실은 곧 부정의한 현실, 모순의 현실)과 타협하게 되다면 그것은 곧 부정부패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부패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 접근으로 대응하여 상당히 갈등 회피적인 정책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양식은 결국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안보이게 덮어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고착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35]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은 어차피 구제도에 대한 개혁 혹은 혁신의 성격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은 "또한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체계"와 일정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정부패의 통제,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국가의 혁신과 발전이라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다분히 갈등지향적 혹은 갈등 촉진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부패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체계적인 덤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부패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5) 이와 같은 점에서 현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여야 합의하에 반부패 정책의 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와서 다시 국가발전을 위하여 부패방지법의 제정 등과 같은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참 고 문 헌

감사원. (1988). 「감사원 40년사」.
강성남. (1997). 우리나라 부패통제기구의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한국부패학회보」. 창간호.
고창훈. (1994).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관악행정학회 동계 심포지움.
공보처. (1997). 「변화와 개혁」.
국무총리행정조정실. (1993). 「제6공화국 국정평가 및 향후과제」.
김명수. (1997). 한국 사회 부패현상과 성격. 김창국 외. 「부정부패의 사회학」.
김영종. (1993). 腐敗文化의 改革政策.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 2(1).
_____. (1996). 「부패학」. 숭실대 출판부.
김영평. (1987). 80년대 정부관료제와 정책결정과정. 「민족지성」. 11.
김창국 외. (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나남출판.
김해동. (1991). 各國의 腐敗統制法과 機構.서울대학교. 「行政論叢」. 29(2).
_____. (1972).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10권 제1호.
김해동 외. (1994). 「관료부패와 통제」. 아산사회복지재단 연구총서 제17집.
김호섭. (1996).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5(4).
_____. (1994). 공직의 윤리성제고를 위한 새정부의 개혁. 「국행정학보」. 28(4호).
문화공보부. (1976). 「서정쇄신」.
박기찬. (1993). 「조직정치론」. 경문사.
박재창. (1993). 공직자재산등록제도. 「한국행정연구」. 2(1). 한국행정연구원.
박홍식. (1990). 내부고발. 「한국행정학보」. 25(3).
배일섭. (1995).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방안 모색. 「한국정책분석학회」. 5(1).
백남치. (1994). 김영삼정부 개혁의 역사적의미와 평가.관악행정학회 심포지움.
법제처. (1993). 「主要國家의 公職者不正防止關係法」.
사회정화위원회. (1988). 사회정화운동사 : 1980-198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7).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안해균. (1986).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오석홍. (1977). 한국정부의 서정쇄신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5(1). 서울대 행정대학원.
_____. (1987). 행정개혁. 조석준 외.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서울대.
_____. (1990). 대한민국의 행정개혁. 「행정논총」. 서울대 행정대학원. 28(1).
_____. (1995). 「행정개혁론」. 박영사.
_____. (1996). 「한국의 행정」. 경세원.
_____. (1997). 「정권말기의 공직기강해이」.서울대행정대학원.행정논총. 35(1).
윤태범 외.(1998). 「한국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_____. (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서울 : 나남출판.
_____. (1997).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행정논집」. 제9권 제1호.
이영균. (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한국행정논집」 8(3).
이윤호. (1997). 검은 돈을 낳는 경제부패. 김창국 외. 「부정부패의 사회학」.
이재상. (1993).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2-1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수일. (1996). 「官僚腐敗論」. 선학사.
전철환. (1988). 政經癒着과 民主化의 課題. 「季刊京鄕」. 봄호.
정승건. (1994). 한국의 행정개혁과 변동:정치권력과 관료정치.「한국행정학보」.제28권 제1호.
정정길. (1989).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전문관료의 역할. 「한국행정학보」 23(1).
조영재. (1980). 「한국의 서정쇄신론」. 율성사.
총무처. (1993).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
_____. (1987). 「정부조기변천사」.
_____. (1982). 「총무처연보」.
최병선. (1994). 「정치행정비리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사회과학도서관 창립 10주년 학술심포지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한국기자협회. (1996).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1945-1995」.
한국행정연구원. (1992). 「政府司正體系 效率化方案」.
현대사회연구소. (1981). 「사회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
Alfiler, M.C.. (1985). Corruption control measure, *PJPA*, Vol.29,No.2.
Caiden, G.E.. (1981)."Public Maladministration and Bureaucratic Corruption." *Public Administraion*, Vol. 3, No. 1.
Clarke, Michael (ed.). (1983). *Corruption*, New York : St.Martin's Press.
Dobel, J.P.. (1978). "The Corruption of a State," *APSR*, Vol. 72.
Etzioni, Amitai. (1984). *Capital Corruption*,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Gardiner, J.A. & T.R.Lyman. (1978), *Decision for Sale*, N.Y.:Praeger.
Gruber,J.E. (1987), *Controlling Bureaucracies*, Univ. of California Press.
Heidenheimer, Arnold J..(ed.) (1990).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Hogwood, B.W. & B.G. Peters. (1985), *The Pathology of Public Policy*, UK:Oxford.
Johnston, Michael. (1982).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Calif: Brooks/Cole.
Jun Jong Sup. (1985). The Paradox of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Seoul:Kyobo.
Klitgaard, Robert. (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ey : Univ. of Calif..
Quah, J.S.T. (1990). Singapore's Experience in Curbing Corruption, in Heidenheimer,A.J..(ed.)(1990).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Scott, J. C.. (1972).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Englewood Cliffs,N.J. : Prentice-Hall.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尹泰範: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한국 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93) (재)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행정, 관료제, 공직윤리, 감사제도 등이며, 주요저서로서는 『관료부패와 통제』(공저, 1994), 『한국의 지방자치』(공저, 1995), 『새행정학』(공저,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공저, 1997),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공저, 1997), 『전환기의 지역경제정책』(공저,1998), 『한국행정론』(공저,1998)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서 「우리 나라 지역통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1997),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1997), 「공무원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1997), 「부정부패 의식의 개혁」(1996), 「지방화시대의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 연구」(1995), 「부정한 자금의 위장방지를 위한 각국의 입법례 분석」(1995) 등이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